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341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09년 4월 일 (제 279 회) |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
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청북도지사 |
| 제 출 연 월 일 | 2009년 4월 8일 |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4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09년 4월 8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가 출연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충북S/W지원센터가 도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의회(제226회 임시회) 동의를 받아 무상대부한 청주의료원 구병동(도유재산)의 대부기간(2004.4.30~2009.4.29)이 도래되어
-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충북S/W지원센터의 이전을 위해 추진하는 오창 U-플랫폼운영센터의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 공사의 준공 및 충북S/W지원센터 이전할 때까지 무상으로 대부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3호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내용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-6(청주의료원 구병동)
- 규 모 : 연면적 4,368㎡중 2~3층 2,166㎡
- 용 도 :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의 창업 보육 및 경영지도
- 대부기간 : 2009.4.30~2010.8.21(1년 4개월)
- 신 청 인 :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(도 출연법인)

3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18호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3호

관 계 법 령 발 취

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]

|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|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|
|--|--|
| <p>제29조 (계약의 방법)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, 증권의 경우에는 「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</u>」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, 이 <u>법 제4조제1항제2호</u>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<u>제76조제2항</u>을 준용한다.</p> <p>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</u>.</p> <p>제34조 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<u>제32조</u>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잡종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<u>대통령령이 정하는</u>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| <p>제29조 (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) ①<u>법 제29조</u> 단서에 따라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06.10.27, 2006.12.30, 2008.4.18, 2008.10.29, 2008.12.31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17. 생략 18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때 <p>제35조 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①<u>법 제34조제1항제2호</u>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개정 2006.12.30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2. 생략 3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|